

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21.월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2. 11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457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2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2. 2. 2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호형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2년 7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 하기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재위탁 대상 시설

- 1) 시설명 : 다윗어린이집
- 2) 소재지 : 고려대로7길 120(동선동)
- 3) 위탁기간 : 2022.07.05. ~ 2027.07.04.(5년)
- 4) 위탁심의 :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(2022.04.예정)

○ 위탁사업의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“다윗어린이집”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¹⁾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(이하“민간위탁 조례”)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○ 재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

시설명 (원장)	소재지/ 건축면적	현 위탁체 (대표)	현 위탁기간	정원/현 원	추진경과
다 윳 (이경자)	· 고려대로7 길 120 (동선동) · 건축면적: 496m ²	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(정순택)	2017.07.05 ~ 2022.07.04	49/38	· 최초 위탁 약정 및 1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(2007.07.05.) · 재 위탁 약정 및 10년 무상 사용 협약체결(2017.07.04.) · 구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(2022. 02.)

1) 재위탁이란 :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. ※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나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적정성 검토

-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²⁾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(이하 “영유아보육 조례”) 제13조제1항³⁾에서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고 명시하고 있으며,

다.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, 재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)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